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의2서식] <신설 2020. 1. 9.>

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

인 증 번 호	제 호		
프 로 그 램 명 칭			
인 증 기 관			
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
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
주 소			
유 효 기 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산 림청 장 직인

유의사항

1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이 취소됩니다.
  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   나.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
   다.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
   라.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 또는 통보를 하지 않고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.
   가.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)
   나. 목재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교육 받는 인원의 수
   다.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3.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4. 인증을 받지 않은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2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